####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2008 ~ 5

제출연월일	2008. 2. 05.
제 출 자	거창군수

## 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 (2007. 12. 13. 공포)사항을 반영하고, 「호적법」이 폐지되고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됨에 따른 불부합한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임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근거조항 수정(안 제1조)
  - O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10조
    - ⇒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
- 나. 본청 여유기구를 실과에 포함(안 제3조, 제4조)
  - O 여유기구(전략사업추진단) ⇒ 실과에 포함
- 다. 읍면 직무의 기초사무 수정(안 제24조)
  - O 호적 ⇒ 가족관계등록

#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(1)「지방자치법」제112조, 제113조
  - (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
  - (3)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1조, 제2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그 밖 에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(2) 입법예고(2008.1. 9. ~ 1. 29.)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###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1조 중 "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"를 "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에 따라"로 한다.
- 제3조의 제목 중 "실·과의 설치"를 "실·과·단의 설치"로 하고, 같은 조제1 항 중 "재난안전관리과를"을 "재난안전관리과, 전략사업추진단을"로 하며, 같은 조제2항 중 "실·과장"을 "실·과·단장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13. 전략사업추진단장
  - 가. 교육지원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
  - 나. 인구증가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
  - 다. 그 밖에 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24조 중 "호적"을 "가족관계등록"으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	제1조(목적)
법」제112조부터 제120조 및 <u>「지방</u>	「지방자치
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	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
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의 규정에	규정」 제13조에 따라
<u>의하여</u> 거창군에 두는 행정기구와	
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	
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	
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3조( <u>실·과의 설치</u> ) ① 군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	제3조( <u>실·과·단의 설치</u> ) ①
실, 종합민원실, 행정과, 재무과, 경	
제과, 주민생활지원과, 사회복지과,	
문화관광과, 산림환경과, 건설과, 도	
시건축과, <u>재난안전관리과를</u> 둔다.	<u>재난안전관리과,</u>
	전략사업추진단을
② <u>실·과장</u> 의 분장사무의 대강은	② <u>실·과·단장</u>
다음과 같다.	
1. ~ 12. (생 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13. 전략사업추진단장
	가. 교육지원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
	나. 인구증가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
	다. 그 밖에 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
	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여유기구) 다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전략사업추진단을 둔다.  1. 교육지원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2. 인구증가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3. 기타 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	<삭 제>
제24조(직무) 읍·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<u>호적</u> · 주민등록업무, 민원서류발급, 행정리· 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 무를 관장한다.	